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비 (안 제2조 ④항, 제16조 ①항)
- 종합자원봉사센터 → 자원봉사센터로 개정

나. 기초자치단체 불필요 조항 삭제 (안 제5조 ①~④항)
-「자원봉사발전위원회」 설치 규정 삭제

다. 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사항 개정 및 신설 (안 제6조의2 ②항 ③항)
- 센터 장 임기 개정 (3년→2년)
- 센터 장 해임규정 신설

라. 센터의 조직 운영 규정 개정 (안 제8조 ②항, ⑥항)
- 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(위탁기간 3년→3년 이내)
-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 (위원수 10인 이하 → 15인 이하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3조 및 시행령 제14조, 제15조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규제심사 : 2019. 6. 27 심사완료 (기획감사실-6267)
라. 성별영향평가 : 2019. 6. 28 평가완료 (가족지원과-25857)
마. 입법예고 : 2019. 7. 24 ~ 8. 12. (20일간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"종합자원봉사센터""를 ""자원봉사센터""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"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"를 "(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기타"를 "그 밖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3년"을 "2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기간 중이라도 센터 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공적, 사적행위로 인하여 직무태만,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
3. 그 밖에 센터 장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

제8조제2항 중 "3년으로 하고"를 "3년 이내로 하고,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따르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약간명의 직원"을 "직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10"을 "15"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년도"를 각각 "연도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종합자원봉사센터"를 "자원봉사센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종합자원봉사센터”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	4. “자원봉사센터”----------.
제5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.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.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·의결 4.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 ③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	〈삭 제〉

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	
제6조의2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 ①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,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	제6조의2(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) ①----------그 밖----------.
②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2년----------.
〈신 설〉	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기간 중이라도 센터 장을 해임할 수 있다. 1.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. 공적, 사적행위로 인하여 직무태만,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. 그 밖에 센터 장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
제8조(센터의 조직과 운영) ① (생략)	제8조(센터의 조직과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	②----------3년 이내로 하고,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따르며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.	④----------직원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	⑥----------15----------.
제10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(생 략)	제10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연도----------·----------연도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보험가입) ①군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	제16조(보험가입) ①----- 자원봉사센터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